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0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김선민·신장식·한창민

박은정 • 차규근 • 정춘생

김준형 • 이해민 • 김재원

김 윤·장종태·조 국

서왕진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 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,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%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,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%,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%,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%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

고 있음.

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%에서 50%로 인상하는 한편,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'10년 단위'에서 '1년 단위'로 하고, 각 기간마다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'10%'에서 '1%'씩 차이가 나도록개정하며,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% 상향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2항제1호 중 "100분의 30"을 "100분의 50"으로 한다.

제7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
- 2.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12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10 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13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20 에 해당하는 금액
- 4. 가입기간이 13년 이상 14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30에 해당하는 금액
- 5. 가입기간이 14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40에 해당하는 금액
- 6.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16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50에 해당하는 금액
- 7. 가입기간이 16년 이상 17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60에 해당하는 금액

- 8. 가입기간이 17년 이상 18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
- 9. 가입기간이 18년 이상 19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80에 해당하는 금액
- 10. 가입기간이 19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90에 해당하는 금액
- 11.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중복급여의 조정) ① (생	제56조(중복급여의 조정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	2
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	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	
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	
추가하여 지급한다.	<b>.</b>
1.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	1
족연금일 때(선택한 급여가	
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)	
: 유족연금액의 <u>100분의 30</u> 에	<u>100분의 50</u> -
해당하는 금액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유족연금액) 유족연금액은	제74조(유족연금액)
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	
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	
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노령연금	<u>,</u>
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	
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	
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	
없다.	
1.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	1.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이면

- <u>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</u> 해당하는 금액
- 2.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

  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

   해당하는 금액

-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
- 2. 가입기간이 11년 이상 12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
- 3.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13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20에 해당하는 금액
- 4. 가입기간이 13년 이상 14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30에 해당하는 금액
- 5. 가입기간이 14년 이상 15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40에 해당하는 금액
- 6.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16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50에 해당하는 금액
- 7. 가입기간이 16년 이상 17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60에 해당하는 금액
- 8. 가입기간이 17년 이상 18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70에 해당하는 금액
- 9. 가입기간이 18년 이상 19년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80에 해당하는 금액

<u>10. 가입기간이 19년 이상 20년</u>
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
분의 590에 해당하는 금액
11.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
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
해당하는 금액